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2. 3. 10. (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보고사항】

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보고	
2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유네스코 협의 경과 및 계획 보고	
3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 신청 기록물 선정 추진 보고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세계 2022-02-01

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 문화재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보고합니다.

나. 추진 배경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필요

-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국내]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명칭한계)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 내포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 과거 유물의 자산적 성격이 강함,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제기

다. 추진 경과

* 과거 2005년, 2008년, 2017년에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논의(연구)가 있어 왔음.

○ ('22.1월)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내부TF 구성 및 회의 개최 [개선(안) 마련]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개최

○ ('22.2월)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개선(안) 보고(7개 분과)
문화재 분야 전문 언론인 자문회의 개최

라. 주요 내용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보고

- 개선 필요성, 명칭 및 분류체계(지정・등록체계 포함) 개선안 등

안건번호 세계 2022-02-02

2.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유네스코 협의 경과 및 계획 보고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안건번호 세계 2022-02-03

3.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 신청 기록물 선정 추진 보고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비공개